

미국

연방고등법원, 저작권 침해의 법정 손해배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알았어야만 한다는 요건은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허원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알았어야만 하는(should have known)"의 요건은 의제인식(constructive knowledge)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과실(negligence)"에 해당하여, "고의(willfulness)"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의 제504조 침해에 대한 구제(§504. Remedies for infringement)에서 감면 요건에 해당함.

☞ 사실관계 및 지방법원 판결

- 피고 Kast(Kraig Rudinger Kast)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다양한 사업체와 웹사이트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임. 피고는 한 사업체의 웹사이트를 개선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개발회사(Only Websites)와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Wells Fargo의 웹사이트를 모방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음. 피고는 Wells Fargo의 웹사이트에 있는 세 장의 사진을 모방하라고 개발회사에게 요구하였고, 개발회사는 이 사진들을 수정하여 피고의 웹사이트에 사용함.
- 원고 Erickson(Erickson Productions, Inc. and Jim Erickson)은 피고가 사용한 사진을 제작하였음. 원고는 2011년 7월에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청함. 피고는 즉시 해당 사진을 웹사이트에서 제거하였으나, 손해배상은 거절함.
- 원고는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의 직접침해(direct infringement), 사용자책임에 의한 침해(vicarious infringement), 기여책임에 의한 침해

(contributory infringement)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원고는 당해 저작권 침해가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미국 저작권법 제504조 (C) (2) (침해에 대한 구제: 손해와 이익 - 법정 손해배상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사진들이 Wells Fargo의 웹사이트에서 복사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피고의 동의 없이 개발회사가 복사했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는 자신이 복제된 사진들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고의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함.
 - 피고가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는 고의 행위에 해당함.
 -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에 대하여 주의태만 했다면 고의에 해당함.
 - 또는 피고는 그러한 행동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하므로 (should have known) 의제인식(constructive knowledge)으로서 이는 고의에 해당함.
- 피고는 “알았어야만 하는”의 부분에 대하여 이는 “부주의함(recklessness) 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기준이다”라고 주장함.
-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원고의 주장에 동의함.
-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피고가 고의로 각 사진들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기여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평결함.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 제504조 (C) (2)에 의해 사진 하나 당 150,000 달러, 총 450,000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함. 이에 피고는 즉각 항소하였음.

항소법원의 판단

- 저작권 침해의 사용자책임 인정을 위해서는 원고가 ① 침해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 ② 침해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direct financial interest)의 증명책임을 부담함.
 - 원고는 두 번째 요건에 대하여, 본 사건 사진들은 피고의 웹사이트가 고객들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고객들이 피고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함.
 -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은 “직접” 이외에 침해행위와 경제적인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casual relationship)가 있어야 한다고 함.
 - 항소법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지방법원의 사용자책임에 의한 저작권 침해 평결 주문을 파기함.
- 과실(negligence)은 고의의 입증에 있어서 악의(actual knowledge), 의도적 외면(willful blindness) 및 부주의함(recklessness)보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인식 상태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임^{<1>}.
 - 항소법원은 악의, 의도적 외면 또는 부주의함이 고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과 의제인식이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는 원고의 입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결함. 즉, “알았어야 하는”이라는 요건은 과실에 해당하여 고의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음.
 -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저작권 고의 침해에 의한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이 재량권 행사의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평결 주문을 파기환송함.

<1> Global-Tech Appliances, 563 U.S. at 770, 131 S.Ct. 2060; Unicolors, 853 F.3d at 992.

평가

-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의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알았어야만 하는”이라는 요건은 고의에 해당하지 않고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감면사항에 해당함.

참고자료

[D.C. No.5:13-cv-05472-HRL](#)

<http://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19/04/16/15-16801.pdf>